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 및 보유동물의 복지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·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호	200	300	500

나.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2호	150	200	300
다. 법 제13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휴원·폐원 또는 휴관·폐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3호	150	250	400
라.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4호	150	200	300 (4차 이상 위반 시 500)
마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5호	200	250	300
바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6호	200	250	300
사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7호	150	200	300
아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8호	150	200	250
자.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9호	150	250	300